

1. 개정 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의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통해 양형 참고자료를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5조가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위 조항을 삭제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조끼형포승의 규격 및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 사망장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형자료 통보」 근거조항의 상향입법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안 제235조 삭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통해 양형 참고자료를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제235조)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위 조항을 삭제함.

나. 어려운 용어 순화

“영치”, “서신” 등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각 “보관”, “편지” 등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다.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 사망장의 각 조문 및 양식 신설(안 제263조의2, 제263조의3, 별지 제28호의2 내지 4서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에 관한 근거규정(제126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경찰관서 등에 통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 교정기관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보서 양식이 필요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는 수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시 등을 사망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사망장의 서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교정기관별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통일된 서식이 필요함.

이에,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 사망장은 별지 제28호의4서식으로 정함.

라. 조기형포승의 규격 및 사용방법 신설(안 제169조제8호, 제17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별표 5, 별표 18의3)

수용자의 인격권 침해 최소화 및 인권친화적 교정행정 구현 목적의 조기형포승이 개발되었는데, 조기형포승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장비에 해당하므로 그 규격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69조제8호 및 제179조제1항에 조기형포승의 근거를 규정

하고, 별표 5에 조끼형포승의 형태와 재질 및 규격을 추가하며, 별표 18의3에 조끼형포승의 사용방법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특기할 사항 없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영치하여 보관”을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로, “소지한”을 “지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교부금품””을 ““전달금품””으로, “교부할”을 “건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영치금”을 “보관금”으로,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부패”를 “씩거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교부금품의 허가)”를 “(전달금품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교부하려고”를 “건네줄 것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원의 교부를”을 “금원을 건네줄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교부하려고”를 “건네줄 것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부를”을 “건네줄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하려고”를 “건네줄 것을”로,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접견·서신수수”를 “접견·편지수수”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영치금”을 “보관금”으로 한다.

제33조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종교물품 등 소지범위)”를 “(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교서적”을 “종교도서”로, “소지하게”를 “지니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교서적 및 성물의 소지를”을 “종교도서 및 성물을 지니는 것을”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수용자 준수사항 등)”을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지하여”를 “지녀”로 한다.

제59조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정지사유 소멸로”를 “정지사유가 없어져”로 한다.

제86조제4항 중 “준수사항”을 “중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102조의 제목 “(교육대상자 준수 기본원칙)”을 “(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수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나는 교육대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교정시설 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를 ““나는 교육대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제반규정을 지키며, 교정시설 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4호 중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로 한다.

제121조 중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135조제1호라목 중 “영치금”을 “보관금”으로 한다.

제169조제8호 중 “벨트형포승”을 “벨트형포승, 조끼형포승”으로 한다.

제179조제1항제2호 중 “별표 18의2”를 “별표 18의2, 조끼형포승의 경우 별표 18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연승줄로 연결

제203조 중 “서신”을 “편지”로 한다.

제207조의 제목 “(물품교부 제한)”을 “(물품전달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부하려고”를 “건네줄 것을”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물품의 교부 신청에 대하여”를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로 한다.

제208조의 제목 “(영치품 등 수시점검)”을 “(보관품 등 수시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치품 및 소지물”을 “보관품 및 마약류수용자가 지니는 물건”으로 한다.

제214조제5호의2 중 “교부하거나”를 “내어주거나 전달하는 행위 또는 허가 없이”로, “교부하는”을 “내어주거나 전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반입·제작·소지·변조·교환”을 “지니거나 반입·제작·

변조·교환”으로 한다.

제215조제4호다목 중 “접견·서신수수·집필”을 “접견·편지수수·집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한다.

제219조의 제목 “(조사 시 준수사항)”을 “(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222조의 제목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통지)”를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접견·서신수수”를 “접견·편지수수”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지”를 “알리기”로 한다.

제235조를 삭제한다.

제6편의 제목 “가석방”을 “수용의 종료”로 한다.

제6편 제1장의 제목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석방”으로 한다.

제236조 앞에 “제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삽입한다.

제245조 앞에 “제2장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삭제한다.

제245조 앞에 “제2절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삽입한다.

제246조제3호다목 중 “서신”을 “편지”로 한다.

제252조 앞에 “제3장 가석방 적격심사”를 삭제한다.

제252조 앞에 “제3절 가석방 적격심사”를 삽입한다.

제260조 앞에 “제4장 가석방의 취소”를 삭제한다.

제260조 앞에 “제4절 가석방의 취소”를 삽입한다.

제260조 중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6편 제2장(제26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석방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영 제143조제3항에 따른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2 서식,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3 서식에 따른다.

제6편 제3장(제2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사망

제263조의3(사망 기록) 영 제148조에 따른 사망장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4 서식에 따른다.

제269조의 제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하겠다”를 “지키겠다”로 한다.

제270조제3호 중 “제269조의 준수사항”을 “제269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다.

별표 5에 제8호다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2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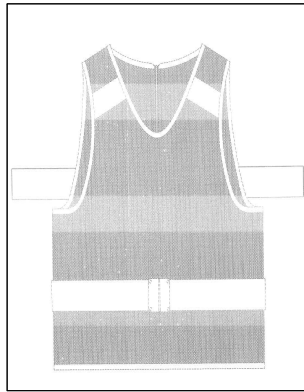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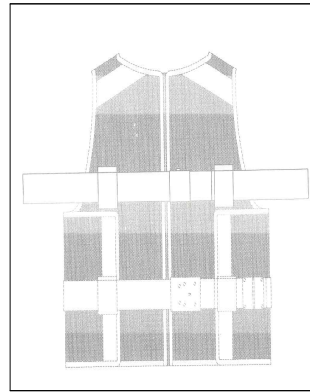
[별표 5]

8. 포승

다. 조끼형포승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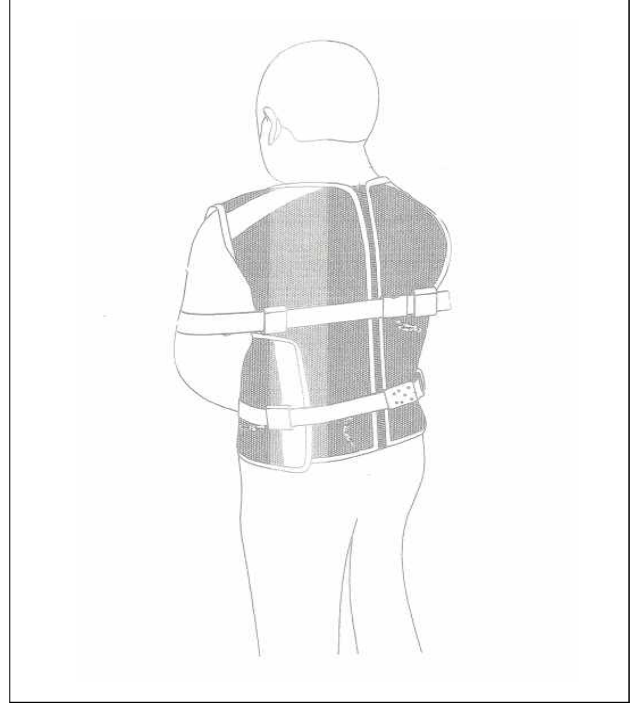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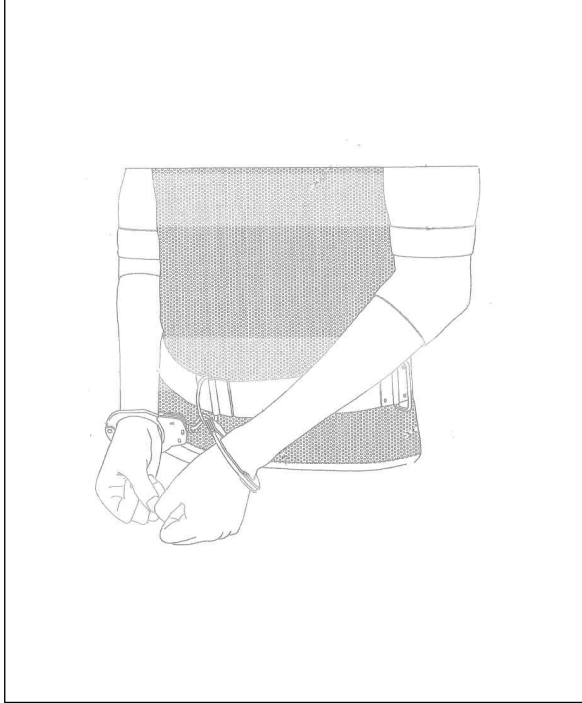


뒷면

형태	재질	규격	구성
팔을 앞으로 집어넣고 입힌 후 뒤쪽 지퍼를 잠그는 조끼형	조끼 : 폴리에스터 허리벨트 : 나일론 팔(결박)벨트 : 나일론 등 및 허리자물통 : 스테인리스 스틸 수갑 : 양손수갑 재질과 동일	• 높이 : 550mm~ 610mm • 너비 : 740mm~ 840mm	• 허리벨트 : 1 • 팔(결박)벨트 : 1 • 허리 자물통 : 1 • 등 자물통 : 1 • 조끼 : 1 • 양손수갑 : 1

[별표 18의3]

조끼형포승 사용방법(제179조제1항제2호 관련)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

석방예정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					
석방 후 거주지 주소					
수용이력에 관한 사항					
죄명					
범수		형명·형기		석방종류	
최초입소일		형기종료일		출소일	
범죄개요					
기타 수용 중 특이사항					

위 석방예정자에 대한 수용이력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에 따라 통보하니 위 석방예정자의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교도(구치)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

석방예정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			
석방 후 거주지 주소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직업훈련 내역			
수상이력			
학력변동 사항			
자격증			
기타			

위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에 따라 통보하니 위 석방예정자의 자립지원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교도(구치)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4서식] <신설 2020. . .>

사 망 장

계	교 감	과 장	부소장	소 장

관리번호:

○○교도(구치)소

수용자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형명 · 형기		형기종료일	
주 소					
등록기준지					

사 망 일 시		사 망 장 소		가족 등 알림 여부	
병명 · 병력		사 망 원 인		의무관 확인	의료과장 (인)

검 시	일시 · 장소		검시자		참여자	
	검시결과					

처 리 방 법	사체처리	일시 · 장소	처리방법			
			☐ 시신인도 ☐ 화장(火葬) 후 인도 ☐ 병원 · 연구기관 등 인도 ☐ 임시매장 ☐ 집단매장 ☐ 자연장(自然葬) ☐ 기 타()			
	사체인도	일시 · 장소	인수인 성명	인수인 생년월일	관계	
	(시신/유골)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교정시설의 보관범위”란 수용자 1명이 교정시설에 <u>영치하여</u>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2. ----- ----- <u>보관</u> ----- -----.
3. “수용자의 소지범위”란 수용자 1명이 교정시설 안에서 <u>소지한</u> 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3.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 <u>지</u> <u>닐</u> ----- -----.
4. “교부금품”이란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수용자에게 <u>교부할</u> 수 있는 금품을 말한다.	4. “전달금품”----- ----- ----- <u>전낼</u>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구매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교정성적 또는 제 74조에 따른 경비처우급을 고려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① ----- ----- ----- -----

하여 정하는 영치금의 사용한
도,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
용자의 소지범위에서 허가한다.

② (생 략)

제19조(제품 검수) ① (생 략)

② 검수관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
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교부금품의 허가) ① 소장
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
에게 금원(金員)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
다. 다만, 수용자 외의 사람이
온라인으로 수용자의 예금계좌
에 입금한 경우에는 금원의 교
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②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을 교부하려
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
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중

----- 보관금-----
----- 수
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제품 검수) ① (현행과 같
음)

② ----- 씩거
나-----

-----.

제22조(전달금품의 허가) ① ----

-----건네줄 것을

-. -----

----- 금원을 건
네줄 것을 -----.

② ----- 건네줄
것을 -----

에서 허가한다. 다만,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종교행사 및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화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교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허가한다.

1. ~ 6. (생략)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 2. (생략)

-----.

----- 건네줄 것을 -----
-----.

③ -----

-- 건네줄 것을 -----

--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 -----

--.

1. ~ 6. (현행과 같음)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u>접견</u> · <u>서신수수</u>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생략)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u>영치금</u>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제33조(종교상담) 소장은 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법 제130조의 교정위원, 그 밖에 교정행정에 참여하는 사회 각 분야의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u>를 말한다)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u>종교물품 등 소지범위</u>) ①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	3. ----- ----- <u>접견</u> · <u>편지수수</u> ----- ---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보관금</u>----- ----- ----- -----. 제33조(종교상담) ----- ----- ----- ----- ----- ----- ----- ----- --- <u>사람을</u> ----- -----. 제34조(<u>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u>) ① ----- -----
--	---

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수용자에게 제1항의
종교서적 및 성물의 소지를 허
가하는 경우에는 그 재질·수량
·규격·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
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구독신청 수량) 법 제47조
에 따라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
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
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
라 한다)는 교정시설의 보관범
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벗
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문
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
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습득에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제36조(구독허가의 취소 등) ①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수용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종교도서
----- 지니게 -
-----.

② -----
-- 종교도서 및 성물을 지니는
것을 -----

-----.

제35조(구독신청 수량) -----

-----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
위-----

-----.

제36조(구독허가의 취소 등) ① -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생략)

제41조(수용자 준수사항 등) ① (생략)

② 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임의 조작·변경하거나 임의수신 장비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이송·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① (생략)

②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

-----.

1. (현행과 같음)

2. -----
----- 지켜야 할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녀-----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

----- 알려야-----
-----.

제60조(이송·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는 사람이 기간만료 또는 그 밖
의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86조(자치생활) ① ~ ③ (생
략)

④ 소장은 자치생활 수행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
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2조(교육대상자 준수 기본원
칙) ① 교육대상자는 교육의 시
행에 관한 관계법령, 학칙 및 교
육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야 한다.

② (생략)

③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소
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고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는 교육대상자로서 공지를
가지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교정시설 내 교육을 성실히 이
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120조(선정기준) ① 외부기업체

--- 정지사유가 없어져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6조(자치생활)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 중 지켜야 할 사항-----

-----.

제102조(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① -----

----- 지켜야 -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행자
는 -----
-----.

“나는 교육대상자로서 공지를
가지고 제반규정을 지키며, 교
정시설 내 교육을 성실히 이수
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120조(선정기준) ① -----

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 3. (생 략)

4. 가족·친지 또는 법 제130조
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
이라 한다) 등과 접견·서신
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
하고 있을 것

5. (생 략)

②·③ (생 략)

제121조(선정 취소) 소장은 외부
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
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
소할 수 있다.

제135조(심사사항) 위원회는 귀휴
심사대상자(이하 이 절에서 “심
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용관계

가. ~ 다. (생 략)

라. 작업장려금 및 영치금

마.·바.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접견·편지
수수·전화통화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1조(선정 취소) -----

----- 지켜야 할 사항-----

-----.

제135조(심사사항)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보관금

마.·바. (현행과 같음)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포승: 일반포승, <u>벨트형포승</u>	8. ----- <u>벨트형포승</u> , <u>조끼형포승</u>
제179조(포승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9조(포승의 사용방법)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8(벨트형포승의 경우 <u>별표 18의2</u>)의 방법으로 한다.	2. ----- ----- ----- ----- ----- ----- <u>별표 18의2</u> , <u>조끼형포승의 경우 별표 18의3</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간에 포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② ----- ----- ----- ----- -----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제203조(특이사항의 통보)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의 서신 및 접견의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07조(물품교부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교부 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208조(영치품 등 수시점검)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영치품 및 소지물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연승줄로 연결

제203조(특이사항의 통보) -----
----- 편지 -----

-----.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

----- 건네줄 것을 ----

-----.
-----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

1. · 2. (현행과 같음)

제208조(보관품 등 수시점검) ---
----- 보관품 및 마약류수용자가 지니는 물건-----

-----.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6. ~ 14. (생략)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16. · 17. (생략)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략)

4. 제214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 나. (생략)

다. 30일 이내의 접견·서신

제214조(규율)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 내어주거나 전달하는 행위 또는 허가 없이 -----
----- 내어주거나 전달하는 -----
--

6. ~ 14. (현행과 같음)

15. -----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

16. · 17. (현행과 같음)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접견·편

수수·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라.·마. (생략)

5. 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생략)

나.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
한

다. ~ 카. (생략)

제219조(조사 시 준수사항) 징벌
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
도관이 징벌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통지) 소장은 법 제110조제2항
에 따라 접견·서신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
대상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지수수·집필 -----

라.·마. (현행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나. ----- 편지수수 --
--

다. ~ 카. (현행과 같음)

제219조(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 지켜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
----- 접견·편지수수 ----

----- 알리기-----

다.

제235조(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量刑) 참고 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6편 가석방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신 설>

제2장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신 설>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형자,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1. 2. (생 략)

3.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나. (생 략)

다. 접견 및 서신의 수신·발신 내역

라. ~ 사. (생 략)

--.

<삭 제>

제6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1절 가석방심사위원회

<삭 제>

제2절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제246조(사전조사) -----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 편지-----

라. ~ 사. (현행과 같음)

제3장 가석방 적격심사

<신 설>

제4장 가석방의 취소

<신 설>

제260조(취소사유) 가석방자는 가
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
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
0조, 제13조제1항, 제15조 및 제
16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
우에는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69조(준수사항) ① 위원은 다

<삭 제>

제3절 가석방 적격심사

<삭 제>

제4절 가석방의 취소

제260조(취소사유) -----

----- 지켜야 할 사항 -

-----.

제2장 석방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
력 등 통보) 영 제143조제3항에
따른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
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2
서식,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식은 별
지 제28호의3 서식에 따른다.

제3장 사망

제263조의3(사망 기록) 영 제148
조에 따른 사망장의 양식은 별
지 제28호의4 서식에 따른다.

제269조(지켜야 할 사항) ① ----

음 사항을 <u>준수하여야</u> 한다. 1. ~ 3. (생략) ② 위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u>준수하겠다는</u>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270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략) 3. <u>제26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u> 하였을 경우 4. · 5. (생략)	----- <u>지켜야</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u>지키겠다</u>----- -----. 제270조(위원의 해촉)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69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u>----- 4. · 5. (현행과 같음)
--	---